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22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0.

발 의 자:김상희·강준현·김두관

김승남 • 류호정 • 박완주

양경숙・윤재갑・인재근

정태호 ·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, 관용여권, 외교관여권 등으로 구분하고 각 여권의 유효기간을 일반여권은 10년,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,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무원 등이 퇴직하여 그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거나 공무 외의 사유로 출국하는 때에도 관용여권이 사용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용여권의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시하고, 각 기관으로부터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하여 관용여권의 올바

른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19조제5항 신설 등).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관용여권의 발급 관리)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3. 관용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제3항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
- 제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20조 중 "소지한 여권"을 "소지한 여권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·반납하지 아니한 여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관용여권의 발급 관리)
	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
	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
	을 포함하여 분기별로 관용여
	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
	한다.
	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
	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
	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
	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
	따라야 한다.
제13조(여권의 효력상실) ① 여권	제13조(여권의 효력상실) ①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	
는다.	
1. · 1의2. (생 략)	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3. 관용여권의 명의인이 제4
	조제3항에 따른 발급대상자에
	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여권 등의 반납 등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20조(여권 등의 직접 회수)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.

제19조(여권 등의 반납 등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
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
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
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
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제20조(여권 등의 직접 회수)
<u>소지한 여권 또는 같</u>
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
의 장이 회수·반납하지 아니한
여권
<u> 1 </u>